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91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이정문・이개호・박 정

이인영 · 이학영 · 김남근

한민수 • 이연희 • 김동아

문진석 • 조승래 • 강훈식

박수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 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 고 있음.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시행되었음.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 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그런데 현행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계부정 조사는 통상 횡령과 배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공동 조사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 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외부전문가"를 "공인회계사,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의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 회계사와 변호사를 각 1명 이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	③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의 비용으로 <u>외부전문가</u> 를 선	<u>공</u> 인회계사, 변호		
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	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회계		
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	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		
구하여야 한다.	하는 외부전문가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제3항의 외부전문가가 조사		
	를 할 때에는 경력 10년 이상		
	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각		
	1명 이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